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75 | 2025.03.04. (2025.02.24.~2025.03.0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2.24.~2025.03.03.)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GB),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1분기 內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공동경비의 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적격분할 시 주식 등을 승계 가능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가속상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시설 등을 추가하고, 주된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획일적으로 관리되던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9인)**」,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및 생산의 촉진을 지원하여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2인)**」,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방사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사선산업 진흥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의원 등 24인)**」,

노동조합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등에서 법안 심사, 업무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발표(기획재정부) 7
-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발표(고용노동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6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8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20인) 2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의원 등 10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2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의원 등 10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4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23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9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20인)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25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2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2인)	27
• 방사선산업 진흥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7
•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의원 등 24인)	28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의원 등 10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의원 등 11인)	3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31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3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기업인수/합병] 상장회사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금융] 금융위원회,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 [에너지·자원] 에너지3법(안) 국회 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 [바이오/헬스케어] 식약처, 세계 최초 생형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4 (2025년 2월 4째주)
- [소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허용... 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선정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 1분기 중 진전 가능한 개별 프로젝트 3건도 지원	2025-02-25
--------------	--	-------------------

기획재정부는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美 신정부 출범(1.20) 후 본격화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조속한 반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이번 대책은, 개발제한구역(GB),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1분기 內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① 입지규제 개선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의 첫 번째 방안으로,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음. 부산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GB로 묶여있던 총 4,203만㎡의 부지가 해당됨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새로운 지역투자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 지침이 신설된 이래 첫 번째 선정 사례이자, 17년간 변함 없었던 ‘지자체가 해제·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했다는 의미라고 밝힘. 국가전략사업으로는 광주 미래차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 지역전략사업으로는 물류, 친환경 에너지, 미래차 소·부·장, R&D 산학연구단지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1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음

15개 사업의 1차적인 투자 이행 효과(개발사업비)는 약 27.8조원으로 추산되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임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그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농지규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여 농산업 투자유치 등 농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임

② 현장 투자 애로 해소

지역에서 건의한 투자애로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음. 이번 대책에는 건의 과제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하고, 1분기 중 진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음. 오늘 의결한 상기의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에

더하여,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여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여부 평가절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3월 내 심의·결정되도록 지원하여 후속 투자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음

금번 대책을 통해 지원키로 한 프로젝트는 총 18건으로(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3건), 최대 약 49.5조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2025-02-25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음.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힘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함.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함.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함

셋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계획임

② 산업(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

첫째,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임.

특히,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하여, 기후요인 및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임

둘째,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함.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함

③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품질 향상

첫째,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함

둘째,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8 시행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 자산 처분 수입의 범위 확대 (제3조제2항)
 -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인건비 지출 제한 적용범위 합리화 (제56조제11항제3호 신설)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인건비로 보지 않도록 함
-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제외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 신설)
 -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④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 (제132조의3 및 제132조의4)
 - 외국법인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외국법인 거주지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 거래·보유 명세서 등을 제외하도록 함
- 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 설정 (제155조의2제4항 신설)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 ⑥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2 제3호 신설)
 - 국세청장은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8 시행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기 전에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8 시행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장기간 운영한 비제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추가하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대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익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8 시행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시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판매 또는 결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8 시행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8 시행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공포, 2025. 4. 1.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비용이 높은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며,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8 시행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계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과도한 과태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6 시행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임대형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3-18 시행 예정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공포, 2025. 3.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도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5 시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5. 3. 13.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전송 요구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재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3-31 시행 예정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등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3. 31. 시행)됨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의 기간,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환주권 상환기간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함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차입공매도의 방법 (제208조제2항)**

- 투자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도록 함

②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 기간 (제208조의4제3항 신설)**

- 전환사채 등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등이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 (제208조의6 신설)

-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주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상장주권의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해당 상장주권 상환기간의 종료일이 되도록 함

④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 (제208조의7 신설)

-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운영하고, 해당 전산설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매 영업일의 대차거래정보 등을 해당 영업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순보유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차입공매도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요청하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2.27. ~2025.03.13.

공동소유자산 등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지출한 공동경비의 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분할 시 주식등을 승계 가능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가속상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동경비 부담기준 합리화 (안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소유지분 및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
- ②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 (안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5호)
 -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 등도 승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팩스: 044-215-8073\)](tel:044-215-422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4. ~2025.03.05.
-------	-------------------	-----------------------------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가 신설(2025년 2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됨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tel:044-215-4131)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2.27. ~2025.03.13.
-------	------------------------	-----------------------------

IFRS17 시행으로 인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법인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되는 범위에 보험회사가 적합한 책임준비금 및 해약**

환급준비금을 추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공익법인등을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tel:044-215-4316)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2.27.
~2025.03.13.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되는 주류의 기존 기준에서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율의 하향 조정

-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하게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함

②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해외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함

③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2병) 폐지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인 병수 2병을 폐지하여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도록 개정함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인하

-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현행대비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⑤ 원산지증명서 발급 운영 사항 규정

- 법 제23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요청 기한 규정을 신설함

⑥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서식 신설 (별지 제76호 서식)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tel:044-215-44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2.27.
~2025.03.13.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대여·구입비용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강의료, 교재비 등으로 정하며,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된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만큼 **안분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이용료와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이용료로 간주하며,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에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tel:044-215-413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2.25.
~2025.04.07.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한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5.4.23.)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대상 변경 (안 제26조)**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전화: 044-203-2446, 팩스: 044-203-3465\)](tel:044-203-2446)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2.26.
~2025.04.14.

획일적으로 관리되던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표,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 등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을 차등화 등 영업신고 절차 신설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 ②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안 제33조)
- ③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안전성평가 대상 추가하는 규정 마련 (안 제21조의2)
- ④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안 제23조)
- ⑤ 취급시설 정기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및 자제점검 대상 정비 (안 제24조, 안 제26조)
- ⑥ 금지물질 예외적 허가 대상 확대 (안 제14조)
- ⑦ 제한·허가물질의 용도관리 개선 (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
- ⑧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신고절차 규정 (안 제52조의3)
- ⑨ 배출저감계획서 변경제출 및 부적합시 수정·보완 제출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
- ⑩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안 제5조의4)

※ 문의처 : [환경부 화학안전과](mailto:shin&kim@shin&kim.com) (전화: 044-203-2488, 팩스: 044-203-345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20인)

2025-02-24 발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산업 발전, 생산·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과학적인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8조의2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2025-02-28 발의

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60조의24)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4인)

2025-02-25 발의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단기매도 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2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및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2025-02-26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같은 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의 종료나 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기·횡령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발생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관련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불수리 사유에 그 대표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존재

하지 아니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2025-02-25 발의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내국법인이 관련 분야의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4인)

2025-02-27 발의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2025-02-27 발의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9인)

2025-02-27 발의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빠른 속도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자본 지수는 167개국 중 107위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 기후위기나 지역소멸 위기 등의 문제 또한 당면현안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사회연대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위기 완화에 기여했음이 이미 확인되었고,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2023년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올해를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임을 공히 인정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의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적 기본 틀 설계,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연대경제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반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추수하지 못해 법규정과 법현실의 괴리가 큼.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해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별법과의 중복·충돌이 발생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025-02-28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황정아의의원 등 20인)

2025-02-24 발의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 기술로 부상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전문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CT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 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 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42조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2025-02-25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33조 및 제104조)

국방위원회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의원 등 11인)

2025-02-26 발의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반도체 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무기체계 전력화에 지연이 발생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공급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대만과 대비하여 현저히 열위에 있음. 국방용 반도체는 대부분 시스템반도체를 핵심부품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 무기체계 적용 국방반도체의 98.9%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전세계적으로 미래의 무기체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 추세이고,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전략 수립과 시행이 시급함

따라서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및 생산의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025-02-24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게임물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안 제12조의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2025-02-24 발의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지정된 5개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수수료로 벌어들인 평균 매출액이 1,551억원에 달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23.1%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영업이익률 4%대인 대기업 유통사와 비교하였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를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82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강승규의원 등 12인)

2025-02-24 발의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라 함)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에서도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보급환경의 변동에 따라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음

특히, 기존 공급의무자들은 자체 투자보다는 공급인증서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을 활용해 의무 이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반면, 외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 운영 국가가 대부분인 상황임. 물론, 우리나라도 2017년도부터 RPS 내 경쟁 입찰을 주요 이행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내 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보급을 견인해 왔고, 2024년 2월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단일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인 입찰제도로의 이행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사선산업 진흥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02-25 발의

최근 방사선기술은 첨단의료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등과 연계하여 융합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의료, 반도체, 배터리, 식품생명, 우주과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방사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기계·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산업활동의 성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방사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 일영의원 등 24인)

2025-02-24 발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대비 및 우리나라 공중보건 강화,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함. 이처럼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임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등 각종 질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을 포함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약바이오헬스특구를 조성하여 인프라, 인허가, R&D, 전문인력, 기금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이 보다 신속하게 육성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이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025-02-24 발의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02-25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음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호의2·제3호의2 신설 및 제30조)**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02-26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에도 외국인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기숙사 제공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22조의2 등)**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2025-02-27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제한 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안 제18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025-02-2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임원 선출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및 제92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2025-02-27 발의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직, 과학·학문·예술분야 전문직의 경우 1주 52시간을 최대한도로 하는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어, 근로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봉 13만 2,964달러 이상의 고소득 사무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White collar exemption)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하였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학문·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안 제63조제4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2025-02-26 발의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2025-02-26 발의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후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21년 새롭게 도입되었음. 그런데 지구 지정·변경 요청에 대한 반려 절차

미비, 주민대표자 회의기구 부재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유사사업인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지정·변경 요청에 대한 반려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의 명확화, 지구 변경 시 주민 동의요건 신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근거 마련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5-02-26 발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쫓겨나는 소외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등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재정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 등에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2025-02-26 발의

건설현장에서의 사망·부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여전히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1,868명이었음. 2023년 대비 17.3% 줄어든 숫자이지만,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2023년(25명) 대비 25% 증가했음

건설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국토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지적이 일자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임 (안 제67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전체회의	3/5(수) 10:00	- 법안 및 청원 상정, 현안질의
외통위	법안소위	3/6(목) 14:00	- 법안 심사
행안위	인사청문회	3/6(목) 10: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회
문체위	전체회의	3/5(수) 10:00	- 법안 의결, 업무보고
농해수위	전체회의	3/6(목) 14:00	- 법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4(화) 07:30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전환시대 고용안정망이 나아갈 길	박주민·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3/5(수) 10:00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 제 도입을 위한 제언	강준현·강훈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3/5(수) 10:0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정희용·조경태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3/5(수) 10:30	GTX 구분지상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현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6(목) 10:30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6(목) 14: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의 권리구제 방안) 공공성과 재산권의 균형	김기표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3/7(금) 09:30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	김정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3/7(금) 10:00	(카트비? 캐디피? 그늘집?) 골프장 갑질 근절을 위한 토론회	박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3/5(수)	「금주의 서평」제718호(2025-9호) 발간	국회도서관	
	3/5(수)	「최신외국정책정보」제5호(2025-5호) 발간		
	3/4(화)	「NABO Focus」제9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3/4(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안을 위한 입법과제’(이슈 와 논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2/25(화)	「Data+」2025-3호(통권 제3호)	국회도서관	
	2/26(수)	「Data&Law」2025-1호		
	2/26(수)	「금주의 서평」제717호(2025-8호)		
	2/27(목)	「최신외국정책정보」제4호(2025-4호)		
	2/25(화)	「NABO 산업동향&이슈」제74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2.24.~2025.03.03.)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24(월)	기업인수/합병	상장회사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26(수)	금융	금융위원회,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발표
2/26(수)	에너지·자원	에너지3법(안) 국회 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2/27(목)	바이오/헬스케어	식약처, 세계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2/28(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4 (2025년 2월 4째주)
2/28(금)	소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